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6. 8.

특 허 청

산업재산인력과

1. 개정이유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및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실무수습을 이수하여야 변리사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변리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실무수습을 집합교육과 현장연수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등록된 변리사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안 제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신설)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실무수습은 집합교육과 현장연수로 구분하되, 집합교육은 250시간, 현장연수는 6개월을 이수하도록 함.

나. 실무수습 실시기관(안 제2조제3항 및 제5항 신설)

집합교육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과 강의 시설,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특허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현장연수는 특허법인,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사무소 등에서 실시하도록 함.

다. 실무수습 실적의 불인정 등(안 제2조제6항 신설)

특허청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무수습 실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실무수습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실무수습 내용이 현저하게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무수습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일부만 인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정보의 공개범위 확대(안 제17조의4)

변리사회가 의뢰인의 변리사 선임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는 정보에 등록된 변리사의 학과 및 학위를 추가하여 의뢰인이 변리사 선임 목적에 맞는 변리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및 행정자치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5. 11. ~ 6.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1건(변리사자격의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의 적정한 운영)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제2조의2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실무수습) ①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실무수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합교육

2. 현장연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집합교육(이하 “집합교육”이라 한다)의 시간은 250시간으로 한다.

③ 집합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한다.

1. 국제지식재산연수원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특허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가.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 시설을 갖출 것

나. 전담인력을 3명 이상 둘 것

다. 집합교육 또는 집합교육과 유사한 교육을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라. 집합교육 계획 및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할 것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현장연수(이하 “현장연수”라 한다)의 기간은 6개월로 한다.

⑤ 현장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한다.

1. 특허법인, 특허법인(유한) 등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소
2.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3. 그 밖에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그 밖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로서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⑥ 특허청장은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의 해당 실무수습의 내용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무수습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일부만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무수습 실적을 인정해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무수습 실적이 제출된 경우
2. 실무수습 내용이 현저하게 부실한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수습의 내용, 기관, 절차 등 실무수습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조의2(종전의 제2조)제1항 중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를 “법 제4조의2”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7조의4제1항제7호 중에 “전문분야 및 전공·경력”을 “전문분야·전공·학과·학위·경력”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그 밖에 학력 등”을 “그 밖에”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u>제2조(실무수습) ① 「변리사법」</u> <u>(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각</u> <u>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실무수습</u> <u>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u></p> <p><u>1. 집합교육</u></p> <p><u>2. 현장연수</u></p> <p><u>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집합교육</u> <u>(이하 “집합교육”이라 한다)의</u> <u>시간은 250시간으로 한다.</u></p> <p><u>③ 집합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u> <u>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기관</u> <u>또는 단체에서 실시한다.</u></p> <p><u>1. 국제지식재산연수원</u></p> <p><u>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u> <u>춘 법인, 기관 또는 단체 중에</u> <u>서 특허청장이 지정하여 고시</u> <u>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u></p> <p style="padding-left: 2em;"><u>가.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u> <u>는 강의 시설을 갖출 것</u></p> <p style="padding-left: 2em;"><u>나. 전담인력을 3명 이상 들</u> <u>것</u></p> <p style="padding-left: 2em;"><u>다. 집합교육 또는 집합교육</u> <u>과 유사한 교육을 수행한</u> <u>실적이 있을 것</u></p>

라. 집합교육 계획 및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할 것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현장연수(이하 “현장연수”라 한다)의 기간은 6개월로 한다.

⑤ 현장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한다.

1. 특허법인, 특허법인(유한) 등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소

2.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3. 그 밖에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그 밖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로서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⑥ 특허청장은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의 해당 실무수습의 내용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무수습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일부만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무수습 실적을 인정해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무수습 실적이 제출된 경우
2. 실무수습 내용이 현저하게 부실한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수습의 내용, 기관, 절차 등 실무수습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조(변리사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변리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실시한다.

② (생략)

제12조(실무수습)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실무수습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실무수습의 내용과 그 밖에 실무수습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조의2(변리사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법 제4조의2-----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p>제17조의4(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방법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6. (생략)</p> <p>7. <u>전문분야 및 전공·경력</u> 등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정보</p> <p>8. (생략)</p> <p>9. <u>그 밖에 학력</u> 등 변리사 선임과 관련된 정보로서 변리사가 공개한 정보</p> <p>②·③ (생략)</p>	<p>제17조의4(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방법 등) ①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전문분야·전공·학과·학위·경력</u> -----</p> <p>8. (현행과 같음)</p> <p>9. <u>그 밖에</u> -----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연 락 처	(042) 481 - 5187